CSR 위원회 규정

한미약품 주식회사

목 차

제 1 장 총칙

제1조【목적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
제 2 장 구성

제2조【구성 및 선임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제3조【위원장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제4조【위원의 임기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
제 3 장 회의

제5조【위원회】 · · · · · · · · 2
제6조【위원회의 소집】 · · · · · · · · 2
제7조【결의방법】 · · · · · · · · 2

제 4 장 권한

제8조【부의사항】 · · · · · · · · 3
제9조【회의록】 · · · · · · · · 3

제 5 장 기타사항

제10조【기타 요구 등】 · · · · · · · · 3
제11조【통지의무】 · · · · · · · · 3
제12조【간사】 · · · · · · · · 4
제13조【경비】 · · · · · · · · 4
제14조【규정의 개폐】 · · · · · · · · 4
〈 부칙 〉 · · · · · · · · 4

제1장 총칙

제1조【목적】

이 규정은 한미약품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CSR 최고의결기구인 CSR위원회의 규정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산하에 위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의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한미사이언스 및 전 계열사, 관계사의 CSR 활동을 포함한다.

제2장 구성

제2조【구성 및 선임】

①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본위원회 과반수 결의로 한다.

제3조【위원장】

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【위원의 임기】

위원의 임기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2년까지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제3장 회의

제5조【위원회】

위원회는 분기 1회씩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 이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6조【위원회의 소집】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회일 24시간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【결의방법】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,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4장 권한

제8조【부의사항】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CSR 과제 선정 및 보고

② 회사의 CSR 전략 및 계획 승인

③ CSR 활동성과(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, 대외평가 등) 보고

④ 사회공헌 집행결과 보고(기부, 후원, 협찬 포함)

제9조【회의록】

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5장 기타사항

제10조【기타 요구 등】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필요 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11조【통지의무】

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2조【간사】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위원회 결의에 의해 정해지는 자가 이에 임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13조【경비】

①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4조【규정의 개폐】

①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